

February 17, 2014

BTL(Built Transfer Lease) 사업에 적용될 적정 물가지수(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확인

통상 사업기간이 긴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의 경우 발주처나 시행자(시공사) 모두 해당 공사기간 중 어떤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실제 물가변동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큰 관심사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업도 단선철도 구간을 복선화 하는 BTL 방식의 사업으로서, 발주처와 사업시행자인 A社 사이에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이 사건 사업에 어떤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통상 장기공사에 적용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건설업 GDP디플레이터,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등이 있었는데, 당시는 어떤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발주처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상에 일응 적용 물가지수를 '건설업 GDP디플레이터'로 규정해 두되, 향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BTL 사업에 적용할 적정 물가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는 그 제시된 물가지수로 변경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실시협약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L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로 제시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자는 발주처에게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물가지수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물가지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물가지수 변경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물가지수 변경을 거부하였고, 이에 시행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건설업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할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약 800억원 이상 더 증액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심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를 '건설업 GDP디플레이터'로 정하였고, '건설업 GDP디플레이터'가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하는 물가지수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당사자 사이에서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하는 물가지수로 적용 물가지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엄격한 법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용 물가지수를 변경하기로 하는 서면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물가지수 변경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게 된 경위와 동기, 해당 조항의 문법적 의미, 물가지수 변경의 당위성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협상 당시 피고 측 협상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상 물가지수 변경에 관한 조항의 의미는, 추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BTL 사업에 적용할 물가지수를 제시하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물가지수가 그 제시된 물가지수로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고,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전라선 철도사업에 있어 적절한 물가지수가 반영되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업시행자는 물론 시공사 및 그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심재두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37 | E-Mail. jdshim@shinkim.com |
| ● 송종호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37 | E-Mail. jhsong@shinkim.com |
| ● 장윤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85 | E-Mail. ysjang@shinkim.com |
| ● 김창화 변호사 | TEL. 02 316 4086 | E-Mail. chwkim@shinkim.com |